FATF 권고 제15호와 트래블룰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기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8년 10월 권고 제15호를 개정하여, 각국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목적으로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를 규제하도록 요구하였고, 용어집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VASP란 영업으로서 타인을 위하여 또는 타인을 대신하여 다섯 가지 활동 중 하나를 수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그 활동은 가상자산과 법정화폐 간의 교환, 가상자산 간의 교환, 가상자산의 이전, 가상자산 또는 이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의 보관 또는 관리, 그리고 발행인의 가상자산 공모 또는 판매와 관련된 금융서비스에의 참여 또는 그 제공입니다. 2019년 6월 FATF는 권고 제15호에 대한 주석서(Interpretive Note)를 채택하였으며, 이는 VASP의 라이선스 또는 등록, 감독, 그리고 모든 범위의 예방조치를 요구합니다. 주석서 제7항 (b)에는 '트래블룰'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금 VASP와 수취 VASP는 가상자산 이전에 관하여 요구되는 송금인 및 수취인 정보를 취득·보유·전송해야 하며, 각국은 1,000미국달러 또는 1,000유로의 소액 기준(de minimis)을 둘 수 있습니다.[1]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2021년 10월 28일 FATF의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법 개정 지침'은 여섯 가지 영역에서 기준을 정교화하였습니다. 가상자산과 VASP의 정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기준의 적용, 개인 간(P2P) 거래의 위험, 라이선스 및 등록, 트래블룰의 이행, 그리고 VASP 감독기관 간의 정보공유입니다. 이 지침은 DeFi 약정의 창설자, 소유자, 운영자가 통제권이나 충분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스스로 탈중앙화되었다고 표방하더라도 VASP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반면 NFT는 지급이나 투자에 사용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정의에서 제외됩니다.[2] 2022년부터 FATF는 이행에 관한 연례 '표적 업데이트'를 발표해 왔습니다. 2025년 6월 26일의 제6차 업데이트는 99개 관할권이 트래블룰 법률을 통과시켰거나 통과 중이며, 불법적인 온체인 활동의 대부분이 이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2025년 2월 Bybit 거래소에서 14억 6,000만 미국달러를 탈취하였으며, 그중 3.8%만이 회수되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전 세계 가상자산 활동의 약 98%를 차지하는 관할권들이 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3]

스위스에서의 반영

스위스는 VASP를 규율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금세탁방지법이 처음부터 금융중개업자를 기능에 따라 정의해 왔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의 교환, 보관 및 이전은 타인 소유 자산을 수령·보관하거나 그 이전을 돕는 전문가의 활동으로서 자금세탁방지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합니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2018년 2월의 ICO 가이드라인과 블록체인 지급에 관한 지침 02/2019에서 이러한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후자는 지급지시와 함께 전송되는 정보에 관한 기존의 FINMA 자금세탁방지령 제10조를 통해 트래블룰을 적용하였습니다. 스위스는 트래블룰에 대해 1,000미국달러/유로의 소액 기준을 채택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따라서 모든 이전에 정보가 수반됩니다. 또한 비수탁형 지갑으로의 이전이나 그로부터의 이전 전에 해당 지갑의 실질적 소유관계를 확인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2021년 환전거래의 본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인확인 기준금액을 1,000스위스프랑으로 낮춘 것은 일회성 거래에 대한 FATF의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스위스의 2016년 FATF 상호평가는 가상자산 관련 개정 이전에 이루어졌지만, 그 후속 보고서들은 스위스가 권고 제15호를 대체로 이행(largely compliant)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4]

싱가포르에서의 반영

싱가포르는 입법을 하였습니다. 2020년 1월 28일 시행된 지급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PSA) 2019는 2018년 10월 개정 이후에 작성되었으며, '디지털 지급 토큰 서비스'라는 명칭으로 FATF의 VASP 정의를 포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급서비스(개정)법 2021은 정의를 이전, 보관 및 중개로 확대하여, 2024년 4월 개정 규정이 시행되자 FATF 용어집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고시 PSN02는 디지털 지급 토큰(DPT)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예방조치와 트래블룰을 시행하며, 전체 정보 제공의 기준금액은 1,500싱가포르달러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2년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2, FSMA)의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자(DTSP) 체제는 한 관할권에서 영업하면서 다른 관할권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VASP에 대한 FATF의 우려에 대응한 것입니다. FATF는 이 우려를 2021년 지침에서 밝히고 매 표적 업데이트에서 되풀이하였습니다. 싱가포르의 2016년 상호평가와 그 후속 보고서들은 싱가포르가 권고 제15호를 이행(compliant)하거나 대체로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5]

다음 라운드

두 관할권 모두 2025년에 시작된 FATF의 제5차 상호평가 라운드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라운드는 효과성에 더 큰 초점을 둡니다. 가상자산은 독자적인 직접성과(immediate outcome)로 평가될 것입니다. 저자는 평가자들이 세 가지 점을 검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수탁형 지갑 이전에 대한 감독, '통제권 또는 충분한 영향력' 기준에 따른 DeFi 프런트엔드의 취급, 그리고 무인가 역외 제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공자에 대한 집행 실적입니다. 스위스의 자율규제기구(SRO) 모델과 싱가포르의 직접 감독은 효과성 측면에서 비교될 것이며, 그 결과는 FINMA 자금세탁방지령과 PSN02의 다음 개정에 반영될 것입니다.

주

1. FATF, Recommendation 15 and Interpretive Note to Recommendation 15, 2018년 10월 및 2019년 6월 개정, "International Standards on Combating Money Laundering and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Proliferation: The FATF Recommendations", 개정판 수록. 트래블룰은 INR 15, 제7항 (b)입니다. ↩
2. FATF, Updated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to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2021년 10월 28일, 파리. 여섯 가지 중점 영역은 FATF의 발간 안내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DeFi에 관하여는 지침 제67항 이하 참조. ↩
3. FATF, "FATF urges stronger global action to address illicit finance risks in virtual assets", 가상자산 및 VASP에 관한 제6차 표적 업데이트, 2025년 6월 26일. 이 업데이트에는 같은 날짜의 Best Practices on Travel Rule Supervision이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
4. FINMA Guidelines for enquiries regarding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initial coin offerings (ICOs), 2018년 2월 16일. FINMA Guidance 02/2019, 2019년 8월 26일. FINMA 자금세탁방지령 제51a조. FATF, Mutual Evaluation Report Switzerland, 2016년 12월, 및 2020년과 2023년의 강화된 후속 보고서. 제F편 제II장 내지 제IV장 참조. ↩
5. Payment Services Act 2019, First Schedule, Part 3, Payment Services (Amendment) Act 2021에 의해 개정. MAS Notice PSN02, 제13항. FSMA 2022, Part 9. FATF, Mutual Evaluation Report Singapore, 2016년 9월, 및 후속 보고서. 제L편 제I장 내지 제III장 참조.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